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등록재산 공개 대상인 검사의 범위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8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21.
3. 회부연월일 : 2025.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에서는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항제5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등록재산 공개 대상인 검사의 범위를 현행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u>대검찰청 검사급</u> 이상의 검사	5. ----- <u>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u> -----
6. ~ 13. (생략)	6.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은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인 검사의 범위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검찰청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의 보직기준에 따라 10년 이상의 법조경력(법조경력)을 보유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하는 검사의 직위를 의미하는 것임.¹⁾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구체적 범위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²⁾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1) 「검찰청법」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2)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삭제 <2015. 2. 11.>
12. 삭제 <2017. 8. 1.>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열거하고 있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 일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에도 해당되어 있었으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직위는 동 규정의 개정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2017년 8월 1일 개정 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삭제됨으로써 현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제외되어 있음.³⁾

3)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보직범위) 개정 연혁

[대통령령 제19887호, 2007. 2. 21, 제정]	[대통령령 제24501호, 2013. 4.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221호, 2017. 8. 1, 일부개정]
제2조 (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하여진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보호국장, 감찰관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2. <u>서울중앙·대구·부산 지방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대전·광주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u>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 내지 제12호의 직위에 있다가 보임된 검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2. <u>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u>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삭제 <2015.2.11> 12. 삭제 <2017.8.1>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인 검사의 범위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등록재산 공개 대상이 되는 검사의 직위 내지 보직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법은 일반직공무원 기준으로 1급 공무원과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을 원칙적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로 규정하면서도 세무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까지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⁴⁾ 등록재산 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는

4)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일정한 직급 또는 계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보수 등 대우가 그에 상당하는 경우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와 해당 공직자가 수행하는 담당 업무의 내용과 성질, 권한의 범위와 책임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등록재산 공개 대상인 검사의 범위가 현행보다 확대될 뿐 아니라 등록재산 공개대상자를 의무 주체로 포함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 대상도 확대되어 규제적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⁵⁾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주식의 취득 제한, 선물 신고, 취업 제한 등 규제를 통해 공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②~④ (생략)

5) 현행법 제14조의4제1항은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 등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를 제한하는 법률로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평등원칙 등 헌법상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율하여야 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바,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서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및 주식백지신탁 제도 적용. 이하 같음)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범위가 불명확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검찰청법」 제30조는 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기준과 관련하여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⁶⁾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에서는 “고검검사급 검사”를 “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

6) 「검찰청법」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로 열거하고 있음.⁷⁾

개정안에 따른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외에도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 또는 임용된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검찰청법」 또는 「검사인사규정」에 따른 “고등검찰청 검사 등” 내지 “고검검사급 검사” 이상의 검사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별도의 기준에 따른 검사의 범위를 상정한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바, 검사의 보직 또는 임용 체계를 고려하여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인 검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검사의 공무집행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7) 「검사인사규정」

제11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3.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각급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까지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법관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등록재산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하려는 사유로 검사의 공무집행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록재산 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와 해당 공직자가 수행하는 담당 업무의 내용과 성질, 권한의 범위와 책임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이에 대해 입법적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의 대상을 확대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사유에 입각하여 직종 간 균형적 규율 등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렇게 볼 때,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 등 검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특별히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재판에서 판결 업무를 수행하는 법관을 제외하고 검사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입법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에 따라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인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도록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그 밖에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법관도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셋째,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관점에서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검사의 경우 그 직무나 직위에 상관없이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제3조제1항제5호),⁸⁾ 공직자윤리위

8)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 · 부총장 · 대학원장 ·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장 · 부기관장 ·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 · 부총재 ·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 · 부원장 ·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원회로 하여금 재산 등록사항을 심사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의 이용 등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제8조제7항),⁹⁾

재산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의 이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의2).¹⁰⁾¹¹⁾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1993. 6. 11.>

9)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3. 12. 26.>

1.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

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다.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⑯ (생략)

10)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

에 응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상으로도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사에 대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나 공정한 직무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큰 등록재산의 공개라는 규제 수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등록재산 공개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에 상응하는 직위 또는 직급에 보직된 검사까지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같은 규제 강화가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는 등 입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인사혁신처는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는 재산내역 공개 외에 주식매각·백지신탁의무 이행,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서 취업제한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범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등법원 부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③~⑥ (생략)

- 11) 아울러, 현행법 제17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음.

장판사 등 다른 공개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무부는 책임과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검사”까지 재산공개대상자에 포함되어 인원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의 재산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와 달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검사”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을 공개대상자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검사에 대해서만 등록재산 공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등록재산 공개대상자는 재산공개 내역이 관보에 영구적으로 게시되고, 부동산의 소재지, 자동차의 종류, 금융자산 내역 등 본인 및 가족의 구체적인 재산이 공개되어 재산등록의무자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사생활의 비밀이 제한되는 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